

고성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 691 호
------	---------

제출년월일:2001.3. 15.

제 출 자:고 성 군 수

1. 개정이유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여 행정의 효율성 제고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무인민원증명발급시스템의 도입운영에 대비한 전자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관련조항의 개정으로 민원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함

2. 주요골자

- 가. 전자수입증지를 사용규정(안 제4조의2 및 제20조)
- 나. 수입증지 판매계약의 변경, 해지 및 승계 신청기한 폐지(안 제11조 및 제14조)
- 다. 판매인의 장부비치 및 검사 규정을 삭제(안 제27조)

3. 참고사항

- 가. 경상남도 정보12410-10734(2000.07.14) : 무인민원발급기 및 통신연결을 위한 준비사항
- 나. 행정규제정비
- 다. 입법예고 : 결과 의견내용 없음

4. 본문 : 붙임참조

고성군수입증지조례증개정조례안

고성군수입증지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2 제목 “수입증지 요금계기의 사용”을 “수입증지 요금계기 및 전자수입증지의 사용”으로 하고, 동조제1항의 “수입증지 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를 “수입증지 요금계기 및 전자수입증지(이하 “계기, 전자”라 한다)”로 하며, 동조제2항, 동조제3항, 제20조제2항 및 제20조제3항 중 “계기”를 “계기, 전자”로 한다.

제11조제1항중 “사유발생 예정 2일전에 계약변경”을 “계약변경”로 하며, 동조제2항중 “2일전에 계약해지”를 “계약해지”로 한다

제14조중 “사유발생일로부터 2일이내에 제7조에 의한 판매인”을 “제7조에 의한 판매인”으로 한다.

제20조 제목 “계기사용수입금의 정산”을 “계기, 전자사용수입금의 정산”으로 한다.

제27조(장부비치 및 검사)를 삭제한다.

별지 제6호서식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의2(수입증지 요금계기의 사용) ①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입증지 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계기는 인영 시 다음 각호의 사항이 선명히 표시되어야 한다.</p> <p>1.~3.(생략) 4. <u>계기 고유번호</u> ③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계기의 관리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하며 발행 기관명, 발행장소, 계기고유번호, 발행개시일등 필요한 사항을 군보 또는 게시판에 고시하여야 한다</p>	<p>제4조(수입증지 요금계기 및 전자 수입증지의 사용) ①----- --계기 및 전자수입증지(이하 “계기, 전자”라 한다)----- ②계기, 전자는----- ----- 1.~3(현행과 같음) 4. <u>계기, 전자</u>----- ③----- -----계기, 전자----- -----계기, 전자----- ----- 제11조(계약의 변경 및 해지) ①판매인이 명의 또는 위치 등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u>사유발생 예정 2일전에 계약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u> ②판매인이 중지의 판매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u>2일전에 계약 해지를 요청하여야 한다</u></p>
<p>제14조(판매인 계약승계) 판매인이 사고, 기타 사유로 판매인의 승계를 받고자 하는자는 <u>사유발생일로 부터 2일이내에 제7조에 의한 판매인 계약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u></p>	<p>제14조(판매인 계약승계)----- ----- -----제7조에 의한 판매인----- -----</p>
<p>제20조(계기사용수입금의 정산) ①(생략) ②계기사용에 의한 수입금은 조정카드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일일결산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계기의 고장 및 기타 취급부주의로 잘 못 인명된 증지는 “결손” 소인을 하되 소인되면을 복사 첨부하여 계기상의 금액과 발행 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p>	<p>제20조(계기, 전자사용수입금의 정산) ①(현행과 같음) ②계기, 전자----- ----- ③계기, 전자----- -----계기, 전자----- -----</p>
<p>제27조(장부비치 및 검사) ①판매인은 별지 제6호 서식의 장부를 비치하여 증지의 수불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군수가 필요한 때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p>	<p>제27조(삭제)</p>